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80
----------	------

제출연월일: 2025. 10. 2.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조례 구성을 일반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과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주민 및 관계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 아이놀이뜰공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구성 개정(장으로 구분)

○ 제1장 총칙

- 조례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제2장 어린이공원 관리

- 관리계획 수립, 행위제한, 안전점검 등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제10조)

○ 제3장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23조)

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아이놀이뜰공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 “아이놀이뜰 시설”, “누리집”,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

다.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규정(안 제11조)

라. 아이놀이뜰공원 이용 시간 등,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휴장일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제14조)

마. 아이놀이뜰공원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제17조)

바. 아이놀이뜰공원 사용권 양도 금지 등, 사용자 수칙,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제20조)

사. 아이놀이뜰공원 손해배상 등, 사용자 유의사항 게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 제22조)

아. 아이놀이뜰공원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자. 아이놀이뜰공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4조)

차. 별표 신설

- 별표 1.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제15조 관련)
-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제16조 관련)
-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 관련)
- 별표 4. 시설 사용자 수칙(제19조 관련)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0조, 제40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있음[가족복지과-38516(2025.9.22.)호]

- (개선 의견) 시설 사용자 수칙 '어린이는 부모와 동반해야 한다'의 부모를 다양한 가족형태(한부모·조손·위탁 등)를 포용하는 용어 사용을 제안
- (반영 내용) '부모'를 '보호자'로 변경

라. 입법 예고: 2025. 9. 16. ~ 9. 26. <10일간> / 의견있음

- 의견 반영 여부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박상엽 (북구 화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및 관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구성을 총칙, 일반적인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아이놀이뜰 공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조례 구성을 제안 	<p style="text-align: center;">< 반 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어린이공원 관리, 제3장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으로 나누어 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나이 표시를 주민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한다는 문구 삽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 시설 사용료 징수 나이 기준은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한다는 문구 삽입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1. 5. 31.>
2. “운영자”란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하 “아이놀이뜰”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아이놀이뜰 시설”이란 아이놀이뜰 내에 있는 그물놀이기구, 바구니 그네,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누리집”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5.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정할인 대상자의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2장 어린이공원 관리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3.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정차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점검)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어린이공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조치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공원 돌보미’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에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제11조(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10번지에 소재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제12조(이용 시간 등) 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이용 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사용자는 아이놀이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아이놀이뜰 시설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1시간 이내) 내에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시설 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제14조(휴장일) 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한다.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을 휴장할 수 있다.

가.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다. 아이놀이뜰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영자가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기간을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① 법 제40조에 따라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자는 사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을 하나만 적용한다.

② 면제 대상은 사용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감 대상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승인받거나 입장 시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등) ①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사정으로 아이놀이뜰 시설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표 3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 휴무일 제외)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2. 제20조에 의하여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

제18조(사용권 양도 금지 등) ① 아이놀이뜰 시설 사용자는 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가능하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에게 시

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 수칙) ① 사용자는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 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 수칙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사용 제한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이놀이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아이놀이뜰 시설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운영자가 아이놀이뜰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이놀이뜰 시설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 시설 손실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기준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자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손괴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양으로 대체해야 한다.
3. 사용자가 수목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쓰러뜨리는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동일한 규격의 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에게 원상복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

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운영자에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경우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22조(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운영자는 제19조의 사용자 수칙과 제21조의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23조(수입금 납입) ① 사용료는 전자결제업체가 1개월 단위로 정산한 후, 그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익금을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구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놀이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제15조 관련)

시설명	사용기준	금 액(원)	비고
그물놀이시설	청소년·성인	7,000	10세 이상
	어린이	5,000	4세이상 9세 이하

※ 시설 사용 나이는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함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제16조 관련)

1. 면제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 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경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차.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3. 100분의 30 경감

-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
- 나.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다.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바.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사. 임신부 배지(badge) 또는 임신부 차량표시 소지자(본인에 한함)
- 아.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자. 20인 이상 단체 이용객
- 차. 입화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4. 100분의 20 경감

- 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 관련)

1. 사용자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

반환 기준일	공제(위약금) 및 반환 금액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20%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

반환 기준일	반환 금액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 배상

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별표 4]

시설 사용자 수칙(제19조 관련)

1. 입장 및 퇴장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아이놀이뜰 그물놀이시설의 이용 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매회당 50분)이며,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운영자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 및 질환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체험수칙

- 사용자는 그물놀이시설 이용 전에 체험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체험 시간은 회당 50분으로 하며, 4세 이상 9세(초등 2)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 체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무릎길이 이상의 바지(치마 불가)를 착용하여야 한다.
- 그물놀이시설 측면 네트에 올라가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주변 체험자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항상 안전거리(1.5m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
- 원통 슬라이드 및 원통 네트 이용 시에는 내부에 다른 체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 원통 슬라이드와 원통 네트 아래에 도착하면 지체없이 도착지에서 벗어나며, 반대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서는 안된다.
- 원통 슬라이드 이용 시 마찰로 피부 쓸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소매 및 긴 바지를 착용하고, 윗옷은 바지 안으로 넣어야 한다.

3. 사용료

- 사용자는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요금을 납입해야 한다.

4. 동물(반려동물 등)

- 반려동물은 그물놀이시설 내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항상 동반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 혐오 또는 유해 동물은 동반 입장을 금지한다.

5. 종교행위 등 금지

- 아이놀이뜰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한다.
- 운영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다.

6. 유실 또는 피해

- 운영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수선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7. 긴급사태

- 위급한 경우 및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

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공원녹지과
- 직 급: 지방녹지주사
- 성 명: 송재탁
- 연락처: (052)290-4412